

선원취업(E-10)

활동범위 및 해당자	<p>내항선원(E-10-1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해운법 제3조제1호(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)·제2호(내항부정기여객운송 사업) 및 제23조제1호(내항화물운송)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법 제2조제6호의 부원(部員)*에 해당하는 자-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** 중 어선을 제외한 총톤수 5톤 이상의 내항상선에 승선하는 부원에 한함*** <p>어선원(E-10-2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(정치망어업), 제40조제1항(동력어선을 이용한 근해어업), 제51조제1항(어획물운반업)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(20톤 이상의 어선)에서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, 선원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원(部員)에 해당하는 자 <p>순항여객선원(E-10-3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적 크루즈 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, 해운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총톤수 2천 톤 이상의 크루즈선에 승선하는 선원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원(部員)에 해당하는 자
▶ 목차	<p>* 부원은 船長, 航海士, 機關長, 機關士, 通信長, 通信士, 運航長, 運航士 등 직원과 어로장, 사무장, 의사 등을 제외한 해원(海員)을 말함(선원법 제2조)</p> <p>**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(어선법에 의한 어선 포함) 및 국적취득부 용선 외국선박, 내항운행 외국선박(단,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, 호수강 또는 항내만 항행하는 선박,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, 자력항행능력 없는 부선은 제외) (선원법 제3조제1항)</p> <p>*** 외국인선원의 총원 및 척당 승선인원, 취업분야 등은 한국해운조합·수협중앙회 등 사용자단체와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가 노사 합의로 결정한 후 해양수산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(선원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, 해양수산부 고시 외국인선원관리지침)</p>

1회 부여

3년

체류기간의 상한	
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	<p>☞ 선원취업(E-10) 사증은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·출장소)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발급</p> <p>☞ '12. 8. 1.부터 사증발급 접수 시 '범죄경력증명서' 및 '건강상태 확인서'를 제출 하여야 함</p> <p>1. 범죄경력 확인 관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제출 서류)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 범죄경력증명서의 요건 】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만, 국적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내무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2) 사증발급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 일 것 </div> <p>2. 건강상태 확인 관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제출 서류) 사증신청인이 자필 기재한 【붙임 3】 양식의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확인서에는 결핵·B형간염·매독 등의 감염 여부 및 마약복용 경험,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경험 등에 관한 사실을 본인이 기재
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	<p>1. 선원취업자 도입규모(총 정원) 결정과정</p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 align-items: flex-start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30%;"> <p>외국인 선원 혼승에 관한 노·사 합의</p> <p>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수협(또는 해운조합)간 외국인 선원 도입규모 합의</p>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30%;"> <p>해양수산부(선원정책과) 노·사합의 검토승인</p> <p>해양수산부에서 노사 합의된 도입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 ➡ 법무부에 건의</p>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30%;"> <p>법무부 외국인 선원 도입규모 최종 결정</p> <p>관련기관(단체) 의견, 선원 수급상황, 이탈현황 등을 종합 고려, 총 정원 결정</p> </div> </div> <p>※ 선원취업(E-10) 자격은 고용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, 20톤 미만 어선에서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비전문취업(E-9-4) 자격에 해당</p> <p>※ 내항선원(E-10-1) 및 순항여객선원(E-10-3)의 외국인 운영기관은 『한국해운조합』이며, 어선원(E-10-2)의 경우 『수협중앙회』에서 담당</p> <p>2.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접수처리</p> <p>가. 절차 흐름도</p>
▣ 목차 사증발급인정서	

발급대상	신청서 제출	접수 및 전산 입력	접수증 교부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초청업체의 장(고용주) ▶ 업체 주소지 관할 청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구비서류 등 확인 ▶ 초청자 및 피초청자 성명 등 전산입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접수증 전산 출력 교부 		
<p>■ (신청관할) 면허증 또는 등록증 상의 회사소재지 또는 동 회사의 ‘주된 영업소’가 있는 지역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·출장소)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</p> <p>■ (대행신청) 비전문취업 절차와 동일하게 업종별 대행기관의 사증발급 인정신청서 신청대행 허용</p> <p>※ 업종별 대행기관 : 내항상선·순항여객선 ➡ 한국해운조합, 어선 ➡ 수협중앙회</p>					
<p>첨부서류</p>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공통서류</td><td style="padding: 5px;">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(별지 제21호 서식), 여권, 사업자등록증, 표준구격시진 1매 ②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③ 신원보증서 ④ 외국인선원고용신고수리서(지방해양항만청장 발급) </td></tr> </table>				공통서류	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(별지 제21호 서식), 여권, 사업자등록증, 표준구격시진 1매 ②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③ 신원보증서 ④ 외국인선원고용신고수리서(지방해양항만청장 발급)
공통서류	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(별지 제21호 서식), 여권, 사업자등록증, 표준구격시진 1매 ②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③ 신원보증서 ④ 외국인선원고용신고수리서(지방해양항만청장 발급)				
<p>«업종별 추가서류»</p>					
내항선원 (E-10-1)	⑤ 『해운법』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·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(최초 신청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시에만 제출) ⑥ 외국인선원고용추천서(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) ⑦ ‘승선정원증서’ 또는 ‘500톤 미만 선박검사증서’ 등 기타 청(사무소·출장소)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⑧ 노사합의 선사별 T/O 운영승인서 (선사별 총 정원제 적용 업체의 경우)				
	⑤ 『수산업법』에 따른 정치망어업면허증 및 관리선사용지정 (어선사용승인)증·근해어업허가증 사본(최초 신청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시에만 제출) ⑥ 선박검사증서 ⑦ 외국인선원고용추천서(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) ⑧ 어획물운반업등록증 (어획물운반업만 해당)				
순항여객선원 (E-10-3)	⑤ 외국인선원고용추천서(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) ⑥ 순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사본(최초 신청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시에만 제출)				
▣ 목차					

방문동거(F-1)

활동범위 및 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친척방문, 가족동거, 피부양, 가사정리,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의 체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- 외교(A-1) 내지 협정(A-3)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-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미성년외국인 유학생과 동반 체류하려는 부모 - SOFA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 -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(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)
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	■ 2년
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	<p>1. 외국인 유학생(고등학교 이하) 동반 부모(F-1-13)</p> <p>가. 해당자</p> <p>■ 해당 교육기관*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의 2촌 이내의 친인척으로서 재정요건 등 아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외국인유학생 1명당 1명 허용**</p> <p>*① 「초중등교육법」 제2조 제1호~3호에 따른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(공민학교, 고등공민학교, 방송통신중·고등학교, 고등기술학교는 제외), ②제5호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***, ③ 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(단, 「초중등교육법」 제10조의2, 제12조에 따른 <u>의무(무상)교육기관은 제외</u>)</p> <p>**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초청 장학생은 원칙적으로 동반 부모 사증 발급 불가</p> <p>*** 학비가 연간 500만원 이상이며, 교육감 설립 인가를 받은 학력 인정 기관만 해당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 체류 비용* 부담능력이 있을 것 <p>* 1년 간 생활비 : 외국인 유학생의 연간 생활비 기준액의 2배 상당 금액(1인 기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(21개 국가 국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 이상이거나, 자산이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중위 수준 이상일 것 <p>* <21개 국가>: 중국, 필리핀, 인도네시아, 방글라데시, 베트남, 몽골, 태국, 파키스탄, 스리랑카, 인도, 미얀마, 네팔, 이란,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, 키르기즈스탄, 우크라이나, 나이지리아, 가나, 이집트, 폐루</p>
<p>▣ 목차</p> <p>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</p>	

<p>▶ 목차</p> <p>공관장 제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</p>	<p>** 재정요건은 연간 소득이나 소유 자산 요건 중 택일 가능하며, 부부의 소득이나 자산은 합산 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타 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최근 5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거나,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사증(사증발급인정서)발급 제한 <p>나. 권한 위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 증(재외공관장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 동반 부모 (2촌 이내 친인척) -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외국인유학생의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 원칙 - 체류기간 1년 이내, 단수 <p>첨부서류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 vertical-align: top; padding: 5px;"> 공통서류 </td>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 padding: 5px;"> ① 사증발급신청서 (별지 제17호 서식), 여권, 표준규격사진 1매, 수수료 ②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(원본 및 번역본 첨부, 호구부, 출생증명서 등) ④ 국내 체류비용 부담능력 입증서류 (3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등) ⑤ 재정능력 입증서류 (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준 이상 금액의 국내의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(인증 또는 공증)한 원천징수영수증, 부동산소유증명, 부동산거래계약서, 예금잔고증명 등 </td></tr> <tr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 ※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, 초청의 진정성,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</td></tr> </table> <p>2.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으로서 공관원과 동일국적을 가진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(F-1-21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주재국 이외의 국가 국민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·출장소)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사증발급(예: 주한인도대사가 필리핀 가사보조인을 고용하는 경우) <p>첨부서류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 vertical-align: top; padding: 5px;"> 공통서류 </td>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 padding: 5px;"> ① 사증발급신청서 (별지 제17호 서식), 여권, 표준규격사진 1매, 수수료 ② 외국공관의 협조공문 ③ 고용계약서 ④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</td></tr> </table>	공통서류	① 사증발급신청서 (별지 제17호 서식), 여권, 표준규격사진 1매, 수수료 ②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(원본 및 번역본 첨부, 호구부, 출생증명서 등) ④ 국내 체류비용 부담능력 입증서류 (3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등) ⑤ 재정능력 입증서류 (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준 이상 금액의 국내의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(인증 또는 공증)한 원천징수영수증, 부동산소유증명, 부동산거래계약서, 예금잔고증명 등 	※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, 초청의 진정성,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		공통서류	① 사증발급신청서 (별지 제17호 서식), 여권, 표준규격사진 1매, 수수료 ② 외국공관의 협조공문 ③ 고용계약서 ④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사본
공통서류	① 사증발급신청서 (별지 제17호 서식), 여권, 표준규격사진 1매, 수수료 ②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(원본 및 번역본 첨부, 호구부, 출생증명서 등) ④ 국내 체류비용 부담능력 입증서류 (3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등) ⑤ 재정능력 입증서류 (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준 이상 금액의 국내의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(인증 또는 공증)한 원천징수영수증, 부동산소유증명, 부동산거래계약서, 예금잔고증명 등 						
※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, 초청의 진정성,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							
공통서류	① 사증발급신청서 (별지 제17호 서식), 여권, 표준규격사진 1매, 수수료 ② 외국공관의 협조공문 ③ 고용계약서 ④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사본						
<p>▶ 목차</p> <p>공관장 제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</p>	<p>** 재정요건은 연간 소득이나 소유 자산 요건 중 택일 가능하며, 부부의 소득이나 자산은 합산 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타 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최근 5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거나,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사증(사증발급인정서)발급 제한 <p>나. 권한 위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 증(재외공관장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 동반 부모 (2촌 이내 친인척) -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외국인유학생의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 원칙 - 체류기간 1년 이내, 단수 <p>첨부서류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 vertical-align: top; padding: 5px;"> 공통서류 </td>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 padding: 5px;"> ① 사증발급신청서 (별지 제17호 서식), 여권, 표준규격사진 1매, 수수료 ②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(원본 및 번역본 첨부, 호구부, 출생증명서 등) ④ 국내 체류비용 부담능력 입증서류 (3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등) ⑤ 재정능력 입증서류 (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준 이상 금액의 국내의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(인증 또는 공증)한 원천징수영수증, 부동산소유증명, 부동산거래계약서, 예금잔고증명 등 </td></tr> <tr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 ※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, 초청의 진정성,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</td></tr> </table> <p>2.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으로서 공관원과 동일국적을 가진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(F-1-21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주재국 이외의 국가 국민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·출장소)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사증발급(예: 주한인도대사가 필리핀 가사보조인을 고용하는 경우) <p>첨부서류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 vertical-align: top; padding: 5px;"> 공통서류 </td>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 padding: 5px;"> ① 사증발급신청서 (별지 제17호 서식), 여권, 표준규격사진 1매, 수수료 ② 외국공관의 협조공문 ③ 고용계약서 ④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</td></tr> </table>	공통서류	① 사증발급신청서 (별지 제17호 서식), 여권, 표준규격사진 1매, 수수료 ②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(원본 및 번역본 첨부, 호구부, 출생증명서 등) ④ 국내 체류비용 부담능력 입증서류 (3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등) ⑤ 재정능력 입증서류 (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준 이상 금액의 국내의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(인증 또는 공증)한 원천징수영수증, 부동산소유증명, 부동산거래계약서, 예금잔고증명 등 	※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, 초청의 진정성,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		공통서류	① 사증발급신청서 (별지 제17호 서식), 여권, 표준규격사진 1매, 수수료 ② 외국공관의 협조공문 ③ 고용계약서 ④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사본
공통서류	① 사증발급신청서 (별지 제17호 서식), 여권, 표준규격사진 1매, 수수료 ②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(원본 및 번역본 첨부, 호구부, 출생증명서 등) ④ 국내 체류비용 부담능력 입증서류 (3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등) ⑤ 재정능력 입증서류 (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준 이상 금액의 국내의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(인증 또는 공증)한 원천징수영수증, 부동산소유증명, 부동산거래계약서, 예금잔고증명 등 						
※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, 초청의 진정성,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							
공통서류	① 사증발급신청서 (별지 제17호 서식), 여권, 표준규격사진 1매, 수수료 ② 외국공관의 협조공문 ③ 고용계약서 ④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사본						

※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, 초청의 진정성,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

3.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외국인 가사보조인(F-1-22, F-1-23, F-1-24)

■ 신청대상

- 투자가 및 전문인력이 신청시점 기준 최소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가사보조인

■ 신청관할

- 자국 소재 한국공관(단, 영주권 취득 또는 취업 등으로 제3국에서 장기 거주 중인 경우에는 거주국 소재 한국공관 신청 가능)

■ 사증발급 (고액투자자 : F-1-22, 첨단투자자 : F-1-23, 전문인력 : F-1-24)

- 공관장 재량으로 체류자격 방문동거(F-1),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, 단 '우수 전문인력' 중 법무부장관의 승인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은 후 사증 발급

첨부서류

- ① 사증발급신청서(별지 제17호 서식), 여권, 표준규격사진 1매, 수수료
- ② 외국인투자신고서(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) 또는 투자기업등록증사본

※ 단, 영 별표 1의 17. 기업투자(D-8)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로 갈음

▶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

- ▶ 산업재산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

- ③ 고용주의 재직증명서(신분증명서)

- ④ 고용주의 소득 요건 입증 자료

-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 증명원, 급여명세서, 통장사본 등

- ⑤ 고용중인 내국인 상시근로자 입증 서류(투자금액 미화 50만불 미만자)

※ 예시 :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, 소득금액 증명원, 급여명세서, 통장사본 등

- ⑥ 가사보조인 고용계약서

- ⑦ 신원보증서

- ⑧ 가사보조인의 졸업증명서 등 학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- ⑨ 1년 이상 고용주의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

▣ 목차

공관장 재량으로
발급할 수 있는
사증

<p>▣ 목차</p> <p>공관장 제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</p>	<p>※ 예시 : 고용계약서, 급여명세서, 통장사본 등</p> <p>※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, 초청의 진정성,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</p> <p>4. 외교(A-1) 내지 협정(A-3)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방문동거(F-1-3) 단수사증</p> <p>첨부서류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첨부서류</td>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사증발급신청서 (별지 제17호 서식), 여권, 표준규격사진 1매, 수수료 ② 친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(호구부, 거민신분증 등) ③ 동거 또는 장기체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</td></tr> <tr> <td>공통서류</td>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SOFA 해당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동반자녀와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는 협정(A-3)자격에 해당 </td></tr> <tr> <td></td><td> <p>※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, 초청의 진정성,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</p> </td></tr> </table>	첨부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사증발급신청서 (별지 제17호 서식), 여권, 표준규격사진 1매, 수수료 ② 친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(호구부, 거민신분증 등) ③ 동거 또는 장기체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	공통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SOFA 해당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동반자녀와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는 협정(A-3)자격에 해당 		<p>※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, 초청의 진정성,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</p>
첨부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사증발급신청서 (별지 제17호 서식), 여권, 표준규격사진 1매, 수수료 ② 친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(호구부, 거민신분증 등) ③ 동거 또는 장기체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						
공통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SOFA 해당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동반자녀와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는 협정(A-3)자격에 해당 						
	<p>※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, 초청의 진정성,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</p>						
	<p>6. SOFA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</p> <p>첨부서류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첨부서류</td>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사증발급신청서 (별지 제17호 서식), 여권, 표준규격사진 1매, 수수료 ② 친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③ 동거 또는 장기체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</td></tr> <tr> <td>공통서류</td>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, 초청의 진정성,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</td></tr> <tr> <td></td><td> <p>7. 자녀양육 지원 등 목적으로 입국하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에 대한 방문동거(F-1-5, 90일 이하) 단수 사증</p> <p>가. 자녀양육 지원</p> <p>1) 초청 자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한국인 배우자 또는 국적·영주(F-5)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</td></tr> </table>	첨부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사증발급신청서 (별지 제17호 서식), 여권, 표준규격사진 1매, 수수료 ② 친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③ 동거 또는 장기체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	공통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, 초청의 진정성,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		<p>7. 자녀양육 지원 등 목적으로 입국하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에 대한 방문동거(F-1-5, 90일 이하) 단수 사증</p> <p>가. 자녀양육 지원</p> <p>1) 초청 자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한국인 배우자 또는 국적·영주(F-5)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
첨부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사증발급신청서 (별지 제17호 서식), 여권, 표준규격사진 1매, 수수료 ② 친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③ 동거 또는 장기체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						
공통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, 초청의 진정성,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						
	<p>7. 자녀양육 지원 등 목적으로 입국하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에 대한 방문동거(F-1-5, 90일 이하) 단수 사증</p> <p>가. 자녀양육 지원</p> <p>1) 초청 자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한국인 배우자 또는 국적·영주(F-5)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						

< ‘결혼이민자’의 범위 >

“결혼이민자”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

◦ 한부모 가족 결혼이민자

< ‘한부모 가족’ 및 ‘다자녀 가족’ 인정 기준 >

○ (한부모 가족) 아래 사람과 그 자녀로 구성된 가족

- “혼인 중 사망한 결혼이민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국민”
- “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”

○ (다자녀 가족) △ 자녀가 3명 이상이며, △ 자녀 모두 「민법」상 미성년자로 구성된 가족

- 초청 시기, 체류기간 연장기간 등을 마지막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

2) 초청(사증발급 신청) 대상

◦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

- (결혼이민자의 부모 모두 국내에 입국할 수 없고, 피초청인 본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) 형제자매, 전혼관계 출생 자녀

3) 초청 시기

- 신청일 기준, △ 결혼이민자(또는 그 배우자)가 임신하였거나, △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초청 가능

- (‘한부모 가족’과 ‘다자녀 가족’에 대한 특례) ‘한부모 가족’과 ‘다자녀 가족’은 자녀가 만 12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초청 가능

4) 법위반 사실 유무 및 제한기간 경과

<초청인>

- 초청인 또는 과거 초청인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본국 가족에게 국내법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, 일정 기간 ‘F-1-5 비자’ 발급 목적 본국 가족 초청 제한
 - (초청인) 「출입국관리법」 제7조의2, 제12조의3,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, 제21조 제2항 또는 제33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
※ 단,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였으나 「비전문취업(E-9) 자격 사증 발급인정서 등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」에 따라 범칙금이 면제된 경우에는 제한 기간 없이 초청 가능

- (과거 초청인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) 현재 본국 가족이 불법체류중이거나 과거 불법체류, 불법취업 또는 형사범인 사실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

<피초청인(사증발급 신청 대상)>

- 피초청인에게 △국내법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, △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, 일정 기간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‘F-1-5 비자’ 발급 제한</p> <p>5) 초청 횟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(자녀 1명당 최대 2회) 초청·피초청 요건을 충족하면, 자녀 1명당 최대 2회 범위 내에서 본국 가족을 ‘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(F-1-5)’ 자격으로 초청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와 모를 동시·순차 초청할 때 초청 횟수는 부와 모에 개별 적용(부모를 모두 초청한 경우의 초청 횟수는 2회) <p>6) 초청 인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1명, 다면 부모에 한해 동시·순차 초청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입국한 부 또는 모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면, 부 또는 모가 아닌 다른 본국 가족을 ‘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(F-1-5)’ 사증발급 목적으로 초청 불가 <p>나. 인도적 사정</p> <p>1) 초청 자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한국인 배우자 또는 국적·영주(F-5)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◦ 한부모 가족 결혼이민자 ◦ (인도적 사유) 결혼이민자, 한국인 배우자, 자녀 중 ‘중증질환자’ 또는 ‘중증장애인’이 있는 경우 <p>2) 초청(사증발급 신청) 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◦ (결혼이민자의 부모 모두 국내에 입국할 수 없고, 피초청인 본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) 형제자매, 전혼관계 출생 자녀 <p>3) 법위반 사실 유무 및 제한기간 경과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〈초청인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초청인 또는 과거 초청인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본국 가족에게 국내법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, 일정 기간 ‘F-1-5 비자’ 발급 목적 본국 가족 초청 제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초청인) 「출입국관리법」 제7조의2, 제12조의3,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, 제21조 제2항 또는 제33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<p>※ 단,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였으나 「비전문취업(E-9) 자격 사증 발급인정서 등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」에 따라 범칙금이 면제된 경우에는 제한 기간 없이 초청 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과거 초청인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) 현재 본국 가족이 불법체류중이거나 과거 불법체류, 불법취업 또는 형사범인 사실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〈피초청인(사증발급 신청 대상)〉</p>
--

- 피초청인에게 △국내법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, △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, 일정 기간 ‘F-1-5 비자’ 발급 제한

4) 초청 인원

- 1명, 다만, 부모에 한해 동시·순차 초청 가능
 -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국한 부 또는 모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면, 부 또는 모가 아닌 다른 본국 가족을 ‘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(F-1-5)’ 사증발급 목적으로 초청 불가

첨부서류

가. 자녀 양육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(신청인) 사증발급신청서 (별지 제17호 서식), 여권, 표준규격사진 1매, 수수료 ②(초청인) 신분증 사본, 초청장, 신원보증서(보증기간 : 입국한 날로부터 3년), 불법체류·취업 방지 서약서 ③(국내 가족관계 입증서류) 초청인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(등본),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(임신한 경우 임신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) <p>※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, 자녀가 친양자의 경우 초청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④(본국 가족관계 입증서류) 결혼이민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모두를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류(해당 국가 정부에서 발급한 공적 서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피초청인이 부모 이외 본국가족인 경우) 결혼이민자의 부모 모두가 사망하거나 질병, 60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입국이 불가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, 피초청인의 직계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 ⑤(자녀가 취학연령인 경우) 재학증명서
나. 인도적 사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~④ 위와 동일 ⑤(중증질환·장애 증명서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중증질환(중증난치질환)’ 또는 ‘산정특례’ 사실이 기재된 진료비 영수증 등 - 장애인증명서(장애인증명서의 ‘종합 장애 정도’란에 ‘중증장애’ 또는 ‘장애 정도 가 심한 장애’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중증장애로 인정) 등
※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, 초청의 진정성,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	

8. 디지털노마드(워케이션) 비자(F-1-D)

1) 발급 대상

- (대상) 해외 사업체 소유자 또는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서 원격근무가 가능한 자 중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자 및 그 가족
- (연령) 만 18세 이상 (동반가족 자녀는 예외)
- (소득)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(GNI)의 2배 이상인 자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(의료보험) 병원 치료 및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 가입 필요 				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첨부서류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 vertical-align: top; padding: 5px;">공통서류</td><td style="padding: 5px;"> ① 사증발급신청서 (별지 제17호 서식), 여권, 표준규격사진 1매, 수수료 ② 재직증명서(동일 업종에 1년 이상 종사 입증 필요) ③ 급여명세서, 잔고증명 등 소득 증빙 서류 ④ 범죄경력증명서,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⑤ 가족관계 입증서류(가족 동반시) ⑥ 기타 재외공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</td></tr> <tr> <td></td><td style="padding: 5px;"> ※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, 조청의 진정성, 조청자 및 피조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</td></tr> </table>	공통서류	① 사증발급신청서 (별지 제17호 서식), 여권, 표준규격사진 1매, 수수료 ② 재직증명서(동일 업종에 1년 이상 종사 입증 필요) ③ 급여명세서, 잔고증명 등 소득 증빙 서류 ④ 범죄경력증명서,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⑤ 가족관계 입증서류(가족 동반시) ⑥ 기타 재외공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		※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, 조청의 진정성, 조청자 및 피조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
공통서류	① 사증발급신청서 (별지 제17호 서식), 여권, 표준규격사진 1매, 수수료 ② 재직증명서(동일 업종에 1년 이상 종사 입증 필요) ③ 급여명세서, 잔고증명 등 소득 증빙 서류 ④ 범죄경력증명서,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⑤ 가족관계 입증서류(가족 동반시) ⑥ 기타 재외공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				
	※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, 조청의 진정성, 조청자 및 피조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				
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	<p>1. 우수인재, 투자자 및 유학생 부모(F-1-15)</p> <p>가. 초청자 요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▣ (우수인재) 취재(D-5), 주재(D-7), 기업투자(D-8), 무역경영(D-9), 교수(E-1)~특정활동(E-7) 자격자로서,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 2배 이상인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 자격의 활동범위를 유지하며 다른 체류자격(F-2, F-5 등)으로 변경한 경우도 포함 ▣ (투자자) 외국인투자촉진법, 외국환거래법, 투자이민제 등에 따라 국내에 3억원 이상을 투자한 후 외국인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중인 자 ▣ (유학생) 국내 대학의 석·박사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하며 체류 중인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, 피초청자 포함 초청자 동반가족이 3명 이상인 경우, 학비 외에 전년도 GNI 50% 이상에 해당하는 연간 체류경비를 국내에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 <p>나. 피초청자 요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▣ (대상) 초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▣ (허용 인원) 최대 2명 이내 동시 체류 허용 <p>다. 사증발급인정서 신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▣ 초청자가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·출장소)에 방문동거(F-1-15), 90일 이하 단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				
▶ 목차	첨부서류				
사증발급인정서					

발급대상

-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(별지 제21호 서식), 여권, 표준규격사진 1매
- ② 초청사유서(취업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기재)
- ③ 신원보증서
- ④ 가족관계입증서류
- ⑤ 소득/투자금/체류경비 입증서류

※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·출장소)장은 초청의 진정성,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

2. 고액투자가(F-1-22) 및 해외우수인재(F-1-24)의 가사보조인

■ 대상

-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 중 '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'을 제외한 대상자

■ 사증발급 : 체류자격 방문동거(F-1), 체류기간 90일 이하 단수사증

첨부서류

-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(별지 제21호 서식), 여권, 표준규격사진 1매
 - ② 외국인투자신고서(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) 또는 투자기업등록증사본
- ※ 단, 영 별표 1의 17. 기업투자(D-8)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로 갈음

▶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

- ▶ 산업재산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

- ③ 고용계약서 사본
- ④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(신분증명서)
- ⑤ 신원보증서
- ⑥ 가사보조인의 졸업증명서 등 학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- ⑦ 고용주의 연간 소득 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
 -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 증명원, 급여명세서, 통장사본 등
- ⑧ 투자금액 미화 50만불 미만자 추가 서류
 - 고용중인 내국인 상시근로자 입증 서류 :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, 소득금액 증명원, 급여명세서, 통장 사본 등

※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·출장소)장은 초청의 진정성,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

▶ 목차

사증발급인정서

3.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(F-1-21)

<p>발급대상</p>	<p>■ 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한외국공관원과 <u>동일국적이 아닌</u> 가사보조인을 초청하는 경우 <p>※ 주한 외국공관원과 동일국적을 가진 가사보조인에 대한 사증발급은 공관장 재량 발급</p> <p>■ 사증발급 : 체류자격 방문동거(F-1-21), 체류기간 90일 이하 단수사증</p> <p>첨부서류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#ccc; padding: 5px; margin-top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(별지 제21호 서식), 여권,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외국공관의 요청공문 ③ 고용계약서 사본 ④ 고용인의 외교관신분증 사본 </div> <p>※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·출장소)장은 초청의 진정성,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</p>
<p>▶ 목차</p>	